

경운대학교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직과정)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학과 및 정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전공 및 승인정원은 교육부의 승인 결과에 따라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교원자격검정 및 교직과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제5조(교원양성위원회 구성)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본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③ 본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교원양성위원회 기능)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직교육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한다.

1. 교직과정 신규 개설 및 폐지에 대한 심의
2. 교직과목 교과운영에 대한 심의
3. 교직과정 이수신청 및 예정자 선발에 대한 심의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대한 심의
5. 교직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예산 심의 및 확정
6.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이수신청) 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제2학년 제1학기초 소정기일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소속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수예정자 선정) 제7조의 신청자중 교직관과 국가관이 뚜렷하고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춘 자로서 학부(과)·전공 성적 순위 및 인·적성 검사 및 면접을 통해 교직과정이수예정자를 선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교육실습) ① 교직과정이수자는 소정기간 내에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을 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정 이수자는 재학 중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 교직과정 이수자로 교직과정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는 정해진 기간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서류를 소속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교직과정 운영 및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실습생이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및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제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